

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

- 충북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(1차) -

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&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」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일

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충청북도 전략산업인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,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,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

□ 수행기간 : 2026. 8. 1. ~ 2026. 11. 30.

※ 상기 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내용

- 충청북도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
□ 사업수행체계 : 대학-지역(충청북도) 기업 컨소시엄 필수

-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
- 대 학 :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
- 수혜기업 :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(비영리기관 참여 불가)
- 공급기업 : 충청북도 소재지 제한 해당없음 (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, 가공, 용역 기업)

< 충북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시제품제작지원 기관 수행 체계 >



2 지원 상세내용

□ 지원대상

- 대 학 : 충북대학교,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
 - ※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(부): 제한 없음
- 기 업 : 충북지역 소재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산업 분야 기업
 - ※ 공고일 기준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기업 시설·부서(영업소 제외)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(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)

□ 지원범위

- 시제품제작 :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지원

지원항목	내용
재료비	○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, 소모성 부품 구매 비용 -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
시험분석료	○ 시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
시작품제작경비 (외주 가공용역비)	○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디자인, 설계(CAD), 3D 프린팅, 금형 제작, PCB 기판 제작, S/W 개발 등의 비용

☐ **지원 산업분야 : 자율주행이동체, 모빌리티부품기술, 인프라, 서비스 등**

산업분야	정의
자율주행이동체	AI 기반 차량 환경 인지·판단·제어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 핵심 기술
모빌리티 부품기술	전동화·지능화 차량에 적용되는 제어기, 센서,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고도화 기술
인프라	V2X 통신, 디지털 트윈, 도로·교통 환경 데이터 구축 등 자율주행 실증 기반 인프라 기술
서비스	AI 기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관제, 교통 운영, 사용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기술

☐ **지원규모 : 총 40백만원**

- 충북대학교 20백만원, 중원대학교 20백만원
 ※ 단,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

☐ **지원상세규모**

-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

<인공지능(AI) · 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>

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 규모				
대학	과제 수(건)	건당 지원금 (백만원)	지원금 총액 (백만원)	기간
충북대학교	2	10	20	26년 8월 ~ 26년 11월
중원대학교	1	20	20	

※ 대학별 시제품제작지원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 참조

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☐ **신청자격**

- 대학 : 충북대학교,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
- 기업 : 충청북도 소재 기업

□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

- (참여제한) 수혜기업,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(신청제한)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
 - － (대 학)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,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(당해연도 기준)
 - － (수혜기업)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,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(당해연도 기준)
- ※ 공동연구센터 : ①첨단바이오, ②차세대 이차전지,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, ④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, ⑤첨단로봇/제조,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, ⑦AI첨단제조, ⑧AX기업혁신
- (서류미비)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(의무불이행)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·환수금·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※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,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. 단,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
- (사전제외)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,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사전제외

1. 기업의 부도
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3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4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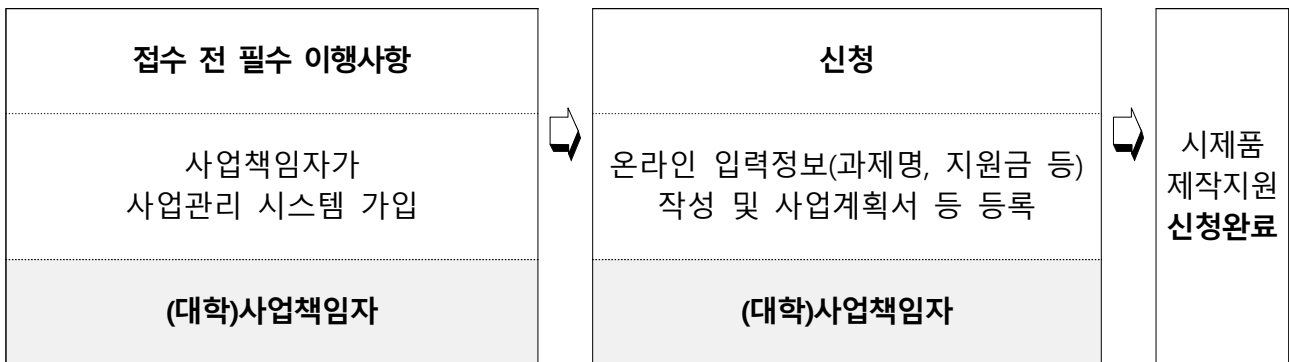
○ 행정사항

- 사업 정산 시,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, 환수할 수 있음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관리 시스템(<https://pms.riia.or.kr>)에 사업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신청서 등 제출
- 과제 접수 절차: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→ 수혜기관/기업 입장 → 사업책임자 로그인 → 공고내역 → 공고명 클릭 → 접수신청 →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, 접수파일 업로드 → 제출하기



□ 제출 서류

-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

구분	제출서류	서식	제출부수
대학	① 사업계획서	[붙임 1]	스캔 사본 1부
	②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[붙임 2]	
기업	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	[붙임 3]	
	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[붙임 4]	
	⑤ 사업자등록증	-	
	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	
	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	-	
	⑧ 공급기업 견적서(해당 시)*	-	

*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

5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

□ 신청기간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6. 7. 1.(수) ~ 7. 20.(월) 17:00까지
- ※ 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불가

□ 유의사항

-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사업비 등 조정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
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-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선정 후 주요사항(사업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- 과제 수행 시,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, 「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
-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

6 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 절차

추진내용	주요내용	추진주체	일정
사업공고	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고	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	'26. 7. 1.(수) ~'26. 7. 20.(월)
사전검토	참여제한 등 사전검토	전담기관	'26. 7. 21.(화) ~'26. 7. 23.(목)
서면평가 (비대면)	신청과제 평가	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(전담기관)	'26. 7. 27.(월) ~'26. 7. 28.(화)
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	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및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	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(전담기관)	'26. 7. 30.(목)~
이의신청	이의신청 기간 이내 (1회에 한함)	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(전담기관)	'26. 7. 30.(목) ~'26. 8. 10.(월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사전검토)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(서면평가)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평가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
- (협약체결)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, 시제품 제작 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

□ 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항목	주요 평가내용
사업계획 및 내용 (40점)	지원의 필요성 (10점)	○ 시제품 제작 필요성 및 지원계획 수립의 타당성 ○ 과거 유사 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활용의 적절성
	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(30점)	○ 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, 우수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○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, 추진전략의 적절성 ○ 사업비 편성 및 산출 근거의 합리성
추진역량 (30점)	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(10점)	○ 사업책임자(책임교수)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○ 지원사업 관련 연구수행 이력 및 성과 적정성
	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(10점)	○ 수혜기업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○ 사업화 관련 역량 및 자원 활용 계획
	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(10점)	○ 수혜기업의 지원 제품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○ 지원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의 적절성
기대효과 (30점)	사업화 가능성 (20점)	○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,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
	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(10점)	○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성 ○ 지역 내 직·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, 수출 등 기타 지역 경제 기여 가능성

- (선정기준)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“지원 대상” 으로 하며,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“지원 제외” 로 분류하나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7 관련 규정 및 지침

☐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

구분	관련 규정
관련 규정	○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
기타	○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○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

8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	이메일
충북대학교 RISE사업단	지산학연협력부	043-249-1279	hsi0788@cbnu.ac.kr
중원대학교 RISE사업단	RISE사업단	043-830-8572	dct0124@jwu.ac.kr

[별첨1]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(충북대학교)

☐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

- 충북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

성과	인정기준
기술이전	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30% 이상
	인정요건 *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(충북지역 한정,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)만 인정

[별첨2]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(중원대학교)

☐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

- 충북 인공지능(AI)·모빌리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

성과	인정기준
기술이전	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30% 이상
	인정요건 *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(충북지역 한정,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)만 인정